

고 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-94호

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[정정]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
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
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 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
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5-34호(2015.5.21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
 은평구고시 제2018-28호(2018.3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
 제2019-143호(2019.5.9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
 은평구고시 제2019-92호(2019.7.18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한 내용 중 착오 기재된
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25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	주된용도	택지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층수)	세대수
당초 고시	7-1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	25,362	100,359.92	22.31	249.78	지하3층/지상22층 (63.0m)	672 (임대 116포함)
정정 고시	7-1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시설	25,362	100,365.34	22.62	249.81	지하3층/지상22층 (63.0m)	672 (임대 116포함)

※ 다른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-92호(2019.7.18.)와 동일. 끝.

고 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-95호

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49호(2010.12.09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26호(2011.05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-53호(2012.08.02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2호(2012.10.25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68호(2013.05.3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55호(2014.02.20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4-55호(2014.06.26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9호(2017.01.26.)로 사업시행(경미한 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46호(2017.05.0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77호(2017.07.27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6호(2019.01.17.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또한, 같은 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19년 7월 25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